기 안 용 지

(전화 : 731-6786)

분류기호 문서번호	주기 30410-411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90. 4. 20		

보조기관	주택국장	전결	협조기관	주무과발송
	주택기획과장			법무담당관 심사필
	주택행정계장	고용중		
기안책임자	정 태 산 (최용환)			
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 조	발신명의	시 장	

문 서 통 제 검열 1990. 4. 20 통제관

발 송 인 발송 1990. 4. 20

제 목	영동아파트 3지구 (서초지구)개발기본계획 변경

(제 1 안) 내부결재

1. 주기 30411-419(90. 4. 12)호 및 건설부 주관 30416-8555(90.4. 13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공문번호에 의거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개발기본계획이 건설부 장관으로 부터 변경승인 되었기 주택건설 촉진법 제 20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동변경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자 합니다.

따로붙임 :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내역 1부. 끝.

(제 2 안)

수 신 수신처 참조

1426

제 목 관보(서보)게재 요청

1. 서울특별시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개발기본계획이 건설부 주관 30416-8555(90. 4. 13)호로 변경승인 되었기 따로붙임 고시문과 같이 관보(서보)에 게재의뢰 합니다(하니 게재할 것).

따로붙임 : 고시문(안) 1부. 끝.

수신처 : 총무처장관, 공보관.

(제 3 안)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개발기본 계획 변경승인 통보

1. 건설부 주관 30416-8555(90. 4. 13)호와 관련 임.

2. 위 공문번호 호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개발기본계획이 따로붙임과 같이 변경승인 되었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따로붙임 :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내역 및 도면 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개발과장, 도시계획과장, 서초구청장(주택과장).

결 재
1990. 4. 28

서울특별시 고시 제 110 호

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

건설부 고시 제 131호 (76. 8. 21)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영동아파트 3지구 (서초지구)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0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니 일반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.

1990. 4. 20

서 울 특 별 시 장

0. 지구개발 기본계획의 명칭 : 서울특별시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개발기본계획

0. 지구개발 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

.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 (1,475,555m^2)

0. 지구개발 계획의 변경개요

. 영동아파트 3지구(서초지구)기본계획중 건축물의 용도규제 계획 변경

: 내역별첨

0. 공람장소 및 방법

. 공람장소 : 주택국 주택기획과, 서초구청 주택과

. 공람방법 : 개별방문 열람

영동아파트 제 3지구(서초) 기본계획 변경승인 내역

5. 건축 규제의 계획

항 목	변경전	변 경 승 인
가. 용도규제계획		
. 주택용지	생 략	(추가) - 사회복지관(종합사회복지관 포함)
. 지구중심	생 략	(추가) - 업무시설(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한다) - 사회복지관(종합사회복지관포함) - 제조장(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)
. 주구중심	생 략	(추가) - 업무시설(금융업소 및 사무소에 한한다) - 사회복지관(종합사회복지관포함) - 제조장(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)
. 분구중심	생 략	(추가) - 사회복지관(종합사회복지관포함)
. 학교용지 등	생 략	현행과 같음

나. 건폐율 규제 계획	생 략	현행과 같음
다. 건축물의 높이규제계획	생 략	현행과 같음
라. 세대밀도 규제계획	생 략	현행과 같음
마.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규제 계획	생 략	삭 제
바. 녹지조성 계획	신 설	주택용지에 설치하는 사회복지관·(종합사회복지관 포함)은 녹지시설을 대지면적의 30%이상 설치
사.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	신 설	지구 및 주구중심내의 제조장은 공동주택과의거리를 70미터이상 이격 설치

6. 주구 및 지구중심의 건축계획

- 각 지구중심,주구중심 및 분구중심 건축물의 개발용도 제한 내용 은 주택국 주택기획과 및 서초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개발기본계획을 개별 방문 열람. 끝.